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5
----------	-----

제출년월일 : 2006. 2. 3.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 1. 개정이유

정부 및 국회에서 수요자중심의 법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한글맞춤법에 맞추어 법령제명 띄어쓰기 및 낫표(「 」)사용을 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정부방침에 적극 부응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한글맞춤법에 의한 제명 등 띄어쓰기 및 낫표(「 」) 사용

#### 제명 띄어쓰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 자치법규의 본문에서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를 인용하는 경우 낫표(「 」)를 사용

- 제1조 중 “법제업무운영규정”을 “「법제업무 운영 규정」”으로 한다.

- 제10조제2항 중 “행정절차법”을 “「행정절차법」”으로 한다.

####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및 근거

한글맞춤법에 의한 법령제명 띄어쓰기 시행기준(법제처 기획예산담당관실-639)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시행 안내(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186, 2005.01.24)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의사항 : 합의사항 없음

### 라. 입법예고 : 생략

### 마. 사유 :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절차를 정하는 규칙으로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행정내부 사무처리에 대한 변경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법제업무운영규정”을 “「법제업무 운영 규정」”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행정절차법”을 “「행정절차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입법예고문안 작성예시 : 제6조 관련)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고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규칙)를 제정(또는 개정,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그 제정(또는 개정, 폐지)이유 및 주요 내용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규칙)안 입법예고

※ 제정의 경우는 위와 같이 하고 전문(전부)개정, 부분(일부)개정, 폐지의 경우는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전문개정의 경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규칙)▽전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 일부제정의 경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규칙)▽일부개정조례(규칙)안 입법예고
- 폐지의 경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규칙)▽폐지조례(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 폐지)이유 (※ 정책의 추진방향, 기본적인 개선방향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작성)

2. 주요내용 (다음과 같이 작성)

- 가. (현행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여 (기대효과)를 도모함.
- 나. (기대효과 또는 개정취지)를 위하여 (현행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함.
- 다. (현행제도)는 (현행제도의 문제점)하므로 이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함.
- 라. (현행제도)는 (현행제도의 문제점)하므로, 이를 (새로운 제도)로 변경하여 (기대효과)를 도모함,
- 마. (제도의 도입의 배경)하므로, (기대효과)를 위하여 (새로운 제도)하도록 함.

###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 :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85-1

(전화 : ○○○○-○○○○~○, FAX : ○○○○ - ○○○○)

### 4. 공청회 개최계획(※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 작성)

가. 개최일시 : ○○년 ○월 ○일 ○시 ○분

나. 개최장소 :

다. 공청사항

(1)

(2)

(3)

라. 발언자 수 :         인

마. 발언신청

공청사항에 대하여 공청회에 참석, 의견 발표를 원하시는 분은 ○○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 : ○○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발언하실 분을 선정하여 통지하겠습니다.

(1) 공청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의견)

(2) 의견 발표자의 주소, 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격으로 발언 신청하는 경우에는 단체·법인명 및 소속 직위를 기재) 및 연락전화번호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u>법제업무운영 규정</u>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자치법규(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법과정에의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예고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 (목적) ----- 「법제업무 운영 규정」-----</p>
<p>제10조 (공청회) ①(생략) ②공청회에 관하여는 <u>행정절차법</u>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다.</p>	<p>제10조 (공청회) ①(현행과 같음) ②----- 「행정절차법」-----</p>